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09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7일
발 의 자 : 이재식 의원
찬 성 자 : 공기환, 최재란,
임준희, 조진호,
윤인숙 의원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1. 12. 8. ~ 2021. 12.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 ---------- ----------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